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11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19년 11월 8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2월 16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나백주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건 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발표이후 자문관 및 위원회의 역할축소에 따라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2030수립 핵심가치 방향에 맞추어 통·폐합 (10개→7 개 분과)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변경(안 제10조)
- 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23조)
 - 위원을 총 105명(당연직 제외)으로 구성하도록 변경
- 다.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 연임 횟수 변경(안 제24조)
 -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 라.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안 제26조)
- 마. 기획조정위원회 변경(안 제27조)
 - 위촉위원 중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원은 25명 이내로 구성
- 바. 분과위원회 변경(안 제28조)
 - 분과위원회 10개 종류 중 7개를 통폐합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로 조 정(먹거리생태·상생분과, 먹거리건강·보장분과, 먹거리공동체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하여 총 7개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개편
 -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11.~ 10. 1.) 결과 : 별도 첨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 수의 조정, 회의 개최횟수의 조정 등을 통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제21조1)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2조2)에 의하면 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및 방향 정책의 통합・조정,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제23조)은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위원수를 105명으로 줄이고, 분과위원회를 현재의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안으로 먹거리시

¹⁾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²⁾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민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을 살펴본 결과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 개최실적이 상이하고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거 리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	제23조(구성) ①
명을 포함하여 <u>150명 이내의 위원</u>	<u>10</u> 5명 이내
<u>으로 구성한다</u> .	(당연직 제외)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u>한다</u>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먹거리 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개최 실적>

연번	분과위원회 명 회의개최실적 참석		참석율 ³⁾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10	56.0%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7	73.3%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7	57.5%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16	62.6%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	11	53.5%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	13	45.6%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18	61.7%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위원회	15	62.7%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14	64.6%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12	53.3%
	전체평균	12.3(회)	59.1%

³⁾ 위원이 중도사퇴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원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실질 참석율임. 예를 들어 15명 정원에 10명이 참석하는 경

- 또한 현행 조례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각 분과별 회의를 매월 1
 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각 분과 회의가 매월 개최되지 않은 상황으로 격월 1회로 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제28조).
- 개정안 제26조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조정 안으로 분기 1회를 반기 1회로 바꾸는 안임.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생 략)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	②
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u>분기</u> 1회	<u>반기</u>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 소집한다.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과의 수와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피로감이 있는 상황으로 먹거리시민 위원회가 심도 있고 밀도 높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을 통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 수 조정과, 먹거리 시민위원회 회의 횟수 조정을 통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 66.6%가 되나 위원이 중도에 사퇴하여 12명이 정원이 되는 경우 83.3%로 계산됨.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2. (현행과 같음)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3. (현행과 같음)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4. 먹거리생태·상생분과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	5. 먹거리건강·보장분과
<u>강)위원회</u>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	6. 먹거리공동체분과
산업)위원회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7.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u><</u> 삭 제>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u><</u> 삭 제>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u><</u>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u>월1회</u> 하	④ <u>격월 1회로</u> -
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	
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별 세부사항은 원안 참조

나. 민간인 자문관 규정과 관련하여

○ 개정안 제10조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두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

먹거리정책자문관으로 직책명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 현행조례와 개정조례는 형식상 차이가 존재할 뿐 내용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다만, 조례에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관련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민간 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간전문가 는 위촉할 수 있음.4)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제10조(민간전문가) 시장은 민간전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	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	단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민간전
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	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u>할 수 있다.</u>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
	<u>할 수 있다.</u>

^{4)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할 것임.

3 입법예고관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음. 입법예고결과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개정 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먹거리전략 2030의 방향성을 고려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반영, 미반영)	
○ 먹거리시민위원 회 기획조정위 원회 윤병선위 원장 외 (9. 27.)	 먹거리시민위원회와 협의 등을 통한 2 차 조례개정 재추진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유지 외 분과 재논의 	 시의회 설득하여 제출기한 연기(10.16. →11.12.까지)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 	
 먹거리시민위 원회 공동위 원장 조현선 외 19명 (10. 1.)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개정조례 공포· 시행에 따른 제2기 위원회 신속히 구 성 및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조례개정 요청 	○ 조례개정 후('20. 1. 9.) 제2기위원회 공 개모집 구성	
 먹거리전략 2030 워킹그룹 김철규 위원장외 (10.2.) 	 서울시 먹거라시민위원회 개편방향 제안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급식 분과, 도시농업 분과, 식품안전 분과'는 별도위원회로 유지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시민위원회 개편(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 먹거리보장 분과,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 먹거리보장 분과, 먹거리공동체 활성화분과,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 반영 	
○ 복지분과위원 회 변혜진 위 원 (10. 18.)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은 삭제 하지 말고 유지 의견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먹거리정책 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음 	
생태분과위원회 최용재 위원원(10. 22.)	○ 생태분과위원회 유지 의견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재 논의	

4 종합의견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 분과위원회의 수 조정, 타 조례를 인용한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 및 분과위원회 회의 수와 먹거리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수 조정을 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11

제출년월일 : 2019년 11월 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발표 이후 자문관 및 위원회의 역할축소에 따라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2030수립 핵심가치 방향에 맞추어 통·폐합 (10개→7개 분과)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변경(안 제10조)
- 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23조)
 - 위원을 총 105명(당연직 제외)으로 구성하도록 변경
- 다.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 연임 횟수 변경(안 제24조)
 -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 라.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안 제26조)

- 마. 기획조정위원회 변경(안 제27조)
 - 위촉위원 중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
- 바. 분과위원회 변경(안 제28조)
 - 분과위원회 10개 종류 중 7개를 통폐합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로 조정(먹거리생태·상생분과, 먹거리건강·보장분과, 먹거리공동체 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하여 총 7개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개편
 -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9. 11.~ 10. 1.) 결과 : 별도 첨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5명 이내(당연직 제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획조정위원장"을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으로,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명"을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월"을 "격월"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월 1회"를 "격월 1회로"로 한다.

- 4. 먹거리생태·상생분과 :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먹거리 자원순환(음식물류 폐기물처리화 등)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
- 5. 먹거리건강·보장분과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영양부족,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을 위한 지침개발,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
- 6. 먹거리공동체분과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이해관계자(시-자치구-먹거리공동체 등)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
- 7.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제10조(민간전문가) 시장은 민간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	판단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민
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	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로 위촉할 수 있다.	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
	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제23조(구성) ①
2명을 포함하여 <u>150명 이내의</u>	<u>10</u> 5명 이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당연직 제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장 등) ① (생 략)	제24조(위원장 등) ① (현행과 같
	<u>이</u>)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2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2차례</u>	<u>한 차례</u>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만 연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생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	②
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u>분기</u>	<u>반</u>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	7]
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생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②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	
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u>기획조정위원장</u> 의 임기는	지명된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기획조정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	③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	
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u>30명</u>	<u>25</u>
이내로 구성한다.	<u>명</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u>월</u>	⑤ <u>격</u>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 - 기	الم الد
현 행	개 정 안
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	
의 ·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	
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	1. (현행과 같음)
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	2. (현행과 같음)
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	
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	3. (현행과 같음)
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	
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	
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	4. 먹거리생태·상생분과: 먹거리
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 기후변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먹거리 자원순환(음식물류 폐
	기물 처리화 등)등 문제해결
	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l	

지원활동

개

-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 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 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 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 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 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 발
-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 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 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 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 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

5. 먹거리건강·보장분과: 지속가 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영양부족,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을 위한 지침개발,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

정

아

- 6. 먹거리공동체분과: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이해관계자(시-자치구-먹거리공동체 등)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
- 7.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	
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	<u><삭 제></u>
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	
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	
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	<u><삭 제></u>
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u>월1회</u> 하	④ <u>격월 1회로</u>
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반영, 미반영)
 먹거리시민 위원회 기획 조정위원회 윤병선위원 장 외 (9. 27.) 	 먹거리시민위원회와 협의 등을 통한 2차 조례개정 재 추진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 품안전분과 유지 외 분과 재논의 	 시의회 상임위 설득하여 제출기한 연기(10.16.→11.12.까지)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
○ 먹거리시민위원회공동 위 원 장조현선외19명 (10. 1.)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개정조 례 공포·시행에 따른 제2기 위원 회 신속히 구성 및 위원회와 협 의를 통한 조례개정 요청 	 조례개정 후('20. 1. 9.) 제2기위 원회 공개모집 구성
 먹거리전략 2030 워킹 그룹 김철 규 위원장 외 (10, 2.) 	 서울시 먹거라시민위원회 개편방향 제안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는 별도 위원회로 유지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고려하여 시민위원회 개편(지속가능 먹거리환경조성분과, 먹거리봉장분과, 먹거리공동체활성화분과, 먹거리 문화교육홍보분과)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유 지 반영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 먹거리보장 분과, 먹 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 반영
복지분과위원회 변혜진 위원(10. 18.)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은 삭제 하지 말고 유지 의견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음
생태분과위원회 최용재 위원(10, 22,)	ㅇ 생태분과위원회 유지 의견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재 논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삭제 관련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 가를 둘 수 있다'로 조문을 변경 	 조문변경 조문 변경(시장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전문 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반영
 먹거리시민 위원회 기획 조정위원회 000위원장 외 (10. 31.) 	 이 위원회 위촉직 공동위원장 연임 제한(2차례→연임 없음) 관련 -1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요청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편중된 위원회운영 및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견의 다양성이 조율될 수 있도록 참여확대 필요성에 의하여 위촉직 공동위원장 임기를 1차례에 한하여 연임
	○ 기획조정위원회 위촉직 공동위원장 연임 제한(2차례→연임없음)관련-1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요청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편중된 위원회운영 및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견의 다양성이 조율될 수 있도록 참여확대 필요성에 의하여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 임기를 1차례에 한하여 연임
	 ○ 기획조정위원회 정기회의 변경 (월 1회→분기 1회) 관련 - 월1회 로는 실질적인 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격월1회로 제안 	기회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격월1회 반영
	 ○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자문사항 조정(10개 분과→6개 분과)관련 -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 분과, 식품안전분과'는 별도 위원회로 유지 -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고려 '먹거리생태·상생분과, 먹거리보장·건강분과, 먹거리공동체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 분과위원회 수 총 7개 분과 	 분과위원회 수 총 7개 분과 반영 법령,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유지 2030 방향성을 고려 '먹거리생태·상생분과, 먹거리보장·건강분과, 먹거리공동체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반영
	 ○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변경 (월 1회→분기 1회) 관련 一월1회로는 실질적인 분과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격월1회 제안 	○ 분과 정기회의를 격월1회 반영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폐합 하여 위촉위원 수가 150명에서 105명으로 축소되는 내용이며, 위원회 운영으로 예상되는 105명 회의 수당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이 예상되는 사항임 (산출근거: 105명×150,000원×6회=94,500천원)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유 효 연(02-2133-4709)